

이화여자대학교 북가주 동창회 회칙

제정 2005 년 2 월 5 일

개정 2011 년 3 월 5 일

개정 2020 년 9 월 5 일

제 1 장. 총칙

제 1 조 (명칭). 본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북가주동창회라고 칭하며,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된 법인 명칭은 Ewha Norcal Association 이다.

제 2 조 (목적).

(1)항. 본회는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및 한국 총동창회와 상호 협조한다.

(2)항. 본회는 모교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며 동창회를 위하여 각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.

제 3 조 (사무소). 본회의 사무소는 북가주에 둔다.

제 2 장. 회원

제 4 조 (자격). 본회의 회원은 북가주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. 단, 이 회칙 제 4 조 (2)항 (다)호에서 정한 준회원은 거주지역에 제한이 없다.

(1)항. 정회원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타대학을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.

(2)항.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준회원으로 한다:

(가)호. 이화여자대학교를 2 년 이상 수료한 자;

(나)호. 본 대학원을 1 년이상 수료한 자;

(다)호. 본회의 회원이 북가주에서 이주한 후, 본회에 계속 남기를 원하는 자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.

제 5 조 (권리와 의무).

(1)항. 정회원은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
(2)항. 준회원은 투표권을 가진다.

제 6 조 (책임). 회원은 이 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납부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. (2020 년 현재 연회비는 \$50)

제 7 조 (포상과 벌칙).

(1)항. 본회와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수 있다.

(2)항.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.

제 3 장. 조직과 역할

제 8 조 (조직의 구성). 본 회의는 총회, 임원회, 감사, 기타 부서로 구성한다.

제 9 조 (총회).

- (1)항. 총회는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(2)항.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정책심의 의결기관이며 회칙제정, 개정, 회장 선출, 감사 선출, 예산 결산의 심의 확정, 기타 중요 안건 등을 의결한다.
- (3)항. 본회의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- (4)항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.
 - (가)호. 정기총회는 제반규칙의 제정과 개정, 사업안 통과와 모든 사업보고 및 예산과 결산 보고를 받는다.
 - (나)호. 정기총회는 매년 1 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 - (다)호.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때 또는 정회원과 준회원 10 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
 - (라)호.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 총회시에는 차기회장 선출을 위하여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일임시킨다. 임시의장 선출 과정은 당기회장이 주관한다.
- (5)항. (표결 방법).
 - (가)호.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 - (나)호. 투표방법은 무기명으로 하며 회의중에 배포된 용지에 표시하여 제출한다. 영상 미팅의 경우에는 영상 미팅 프로그램에서 허락하는 방법을 택해 무기명으로 투표를 진행한다. 단, 합당한 사유가 있을때는 의장이 다른 투표 방법을 선택할수 있다.

제 10 조 (임원회).

- (1)항. 임원회는 이회의 업무 진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 회장 1 인, 부회장 1 인, 총무 1 인, 서기 1 인, 회계 2 인, 필요시에는 회장이 임원보조를 둘수 있다. 부회장과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(2)항. 임원회는 이회의 매 회계년도 예산과 결산, 사업계획과 사업 활동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(3)항.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의 개회가 불가능할 때에는 임원회가 총회의 통상권을 행사한다. 다만 임원회는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.
- (4)항. 회장과 부회장은 임기를 2 년으로 한다. 연임은 할수없으며, 단, 한번에 한하여 재임은 할수 있다.
- (5)항. (자격).
 - (가)호. 회장의 자격: 최근 연속 3 년 이상 동창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최근 연속 3 년 이상 동창회에 참여한 정회원으로 한다.
 - (나)호. 감사와 임원자격: 최근 연속 2 년 이상 동창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최근 연속 2 년 이상 동창회에 참여한 정회원으로 한다.

(다)호. 투표권자의 자격: 최근 연속 2 년 이상 동창 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최근 연속 2 년 이상 동창회에 참여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.

제 11 조 (감사).

- (1)항. 본 회에 2 이내지 3 인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를 2 년으로 한다.
- (2)항. 감사의 선출은 회장 선출이 없는해에 한다.
- (3)항.감사는 본 회의 회계 결산을 감사하며 3 월 임시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한다.

제 12 조 (장학위원회 구성 및 역할).

- (1)항. 장학위원회는 회장과, 총회에서 선출된 4 명의 정회원으로 한다.
- (2)항. 장학위원의 역할은 장학금 계획과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며 장학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.
- (3)항. 장학위원회에는 별도의 회계를 두고 재정관리를 한다.

제 13 조 (본회의 부서구성).

- (1)항.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수 있다: 동창 골프회; 동창 합창반.
- (2)항. 각 부서의 운영과 재정은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맡아서 한다.
- (3)항. 각부서의 회장은 최근 연속 2 년이상 동창회에 참여한 정회원으로 한다.
- (4)항. 부서의 신설은 임원회에 신청하며, 임원들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설립한다.

제 14 조 (후보추천). 본 회에서 선출될 후보는 본인 스스로 추천할수 없다.

제 15 조 (이사회). 본 회의는 적절한 시기에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정에 맞게 본 회의가 운영되도록 관찰할 의무를 갖는다.

제 4 장. 재정

제 16 조 (재정).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, 찬조금, 기타 사업 조성금으로 충당한다.

제 17 조 (회계연도). 본 회의 회계연도는 1 월 1 일부터 같은 해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.

제 5 장. 회칙 개정

제 18 조 (회칙개정).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,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과 준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부칙

제 19 조 본 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준한다.

제 20 조 경조사는 본 회의 회원이나 배우자중 1 회에 한하여 100 불을 지불한다. (회비 2 회 이상 납부한 회원에 한함)

제 21 조 이 회칙은 개정안이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